

#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제안요지

## 1. 개정사유

- 중요소송(화해) 대상금액을 서울시 소송사무처리규칙과 동일하게 조정
- 소송심의회 위원구성을 본부장급에서 처장급으로 변경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소송대리인 위임보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중요소송 대상금액을 서울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의 중요소송 지정금액 및 소송심의 대상 금액과 동일수준으로 상향 조정
  - 대상금액 소가 20억원 → 30억원
- 소송대리인 위임보수 지급기준이 일정범위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급액 범위내 중간금액(고정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소송심의회 위원을 본부장급에서 처장급으로 변경
  -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심의회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위원구성 변경
  - 위원장 유고 시 업무대행 조항은 소송심의회 성격상 부적절하여 삭제
- 기타 이탈자 및 문구 수정

##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0조(입안)
- 개정절차 : 부서의견 조회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장결재 → 시행

#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소가 20억 원”을 “소가 30억 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수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를 “수시로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하는 범위 내에서”를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송무담당 부서를 관장하는 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본부별 주무처장 또는 사건유관 부서장과 송무담당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제4항 중 “법무담당부서장”을 “법무담당부장”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5호 중 “포상금”을 “특별승소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설명은”을 “제안설명은”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 .부터 시행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현행)

위임보수 지급기준(제42조 관련)

소 송 물 가 액	지 급 액(원)
5천만원 미만	3,000,000원 이하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00,000~5,000,000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00,000~7,00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00~10,000,000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7,000,000~15,000,000원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000,000~20,000,000
30억원 이상	협의 결정

※ 위임보수 지급기준은 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정함

(개정)

위임보수 지급기준(제42조 관련)

소 송 물 가 액	지 급 액(원)
5천만원 미만	3,0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000,000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000,000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000,000원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4,000,000원
30억원 이상	협의 결정

※ 위임보수 지급기준은 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정함

#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b>제4조(중요한 소송)</b> 공사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소송 및 화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공사가 원고가 되는 <u>소가 20억 원</u> 이상의 사건 중 소송심의회에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소송 및 화해</p> <p>2. 사장이 사업경영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및 화해</p>	<p><b>제4조(중요한 소송)</b> _____                      _____                      _____                      -----.</p> <p>1. _____ <u>소가 30억 원</u>                      _____                      _____                      -----</p> <p>2. (현행과 같음)</p>	<p>중요소송 대상 금액을 서울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및 공사 소송심의회 규정상의 금액과 동일수준으로 조정하여 동일성을 기하고자 함.</p>
<p><b>제19조(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직원의 유의사항)</b>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1.~3.(생략)</p> <p>4. 소송대리인은 제소하거나 응소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한 상대 당사자의 항변의 요지, 입증방법, 감정인과 감정의 결과, 검증결과, 소의 확장과 감축 및 소송참가와 탈퇴 등 소송 진행사항에 관하여 송무 담당부서장에게 <u>수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5. (생략)</p>	<p><b>제19조(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직원의 유의사항)</b> _____                      _____                      _____                      _____.</p> <p>1.~3.(현행과 같음)</p> <p>4.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_____ <u>수시로 보고</u>                      하여야 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수시 보고서 제출 문구 삭제 (구두보고 가능)</p>
<p><b>제42조(위임보수)</b> 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의 위임보수는 별표 2(위임보수 지급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지급한다.</p> <p>② 위임사건의 소송수행 중 소송물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도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p>	<p><b>제42조(위임보수)</b> ① _____                      _____                      _____                      _____ <u>정하는 바에 따라</u>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위임보수 지급 기준 별표 2의 지급범위를 고정액으로 변경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b>제53조(구성)</b>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송무담당부서를 관장하는 본부장(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본부장과 송무담당부서장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직제상의 상임이사 순으로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p> <p>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송무담당부서의 법무담당부서장과 법무담당 직원이 된다.</p>	<p><b>제53조(구성)</b> ① _____  _____</p> <p>_____관장하는 실장이 되고  _____각 본부별 주무처장  또는 사건유관 부서장과 송무담당부서장 기타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④ _____  _____</p> <p>_____법무담당부장  -----</p>	<p>- 송무담당부서를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이므로 위원은 본부장에서 처장급으로 변경하며, 소송심의회 성격상 위원장 대체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유고규정 삭제</p> <p>- 송무담당부서장은 심의위원으로 출석하므로 간사를 법무담당 부장으로 수정</p>
<p><b>제54조(심의사항)</b> ① (생략)</p> <p>② 소송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4. (생략)</p> <p>5. 사내변호사,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급에 관한 사항</p> <p>6. (생략)</p>	<p><b>제54조(심의사항)</b> ①(현행과 같음)</p> <p>② _____  -----</p> <p>1.~4. (현행과 같음)</p> <p>5 _____  _____특별  <u>승소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u></p> <p>6. (현행과 같음)</p>	<p>서울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소송 심의사항과 동일하게 개정</p>
<p><b>제56조(심의회 운영)</b></p> <p>① (생략)</p> <p>②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 소송의 소관부서장이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심의사항은 간사가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p>	<p><b>제56조(심의회 운영)</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재인설명은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문구 수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별표 2] 위임보수 지급기준(제4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소 송 물 가 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 급 액(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천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00원 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00~5,0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이상 5억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00~7,0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0~10,0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0,000~15,0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0,000~20,0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억원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협의 결정</td> </tr> </tbody> </table> <p>※ 위임보수 지급기준은 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정함.</p>	소 송 물 가 액	지 급 액(원)	5천만원 미만	3,000,000원 이하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00,000~5,000,000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00,000~7,00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00~10,000,000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7,000,000~15,000,000원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000,000~20,000,000원	30억원 이상	협의 결정	<p>[별표 2] 위임보수 지급기준(제4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소 송 물 가 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 급 액(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천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이상 5억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억원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협의 결정</td> </tr> </tbody> </table> <p>※ 위임보수 지급기준은 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정함.</p>	소 송 물 가 액	지 급 액(원)	5천만원 미만	3,0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000,000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000,000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000,000원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4,000,000원	30억원 이상	협의 결정	<p>- 위임보수 지급의 기준확정을 통해 보수 지급기준의 결정을 명확히 하고자 기존의 지급액 범위내 중간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p> <p>- 소송물가액 중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오기로 수정</p>
소 송 물 가 액	지 급 액(원)																																	
5천만원 미만	3,000,000원 이하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00,000~5,000,000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00,000~7,00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00~10,000,000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7,000,000~15,000,000원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000,000~20,000,000원																																	
30억원 이상	협의 결정																																	
소 송 물 가 액	지 급 액(원)																																	
5천만원 미만	3,0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000,000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000,000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000,000원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4,000,000원																																	
30억원 이상	협의 결정																																	